

■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[별표] <개정 2023. 1. 26.>

구강보건센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(제16조의2제3항 관련)

| 시 설        | 면적                  | 장 비  | 비 고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1. 구강진료실   | 40m <sup>2</sup> 이상 | 가. 치과용 유닛 체어 2대<br>나. 진료용의자<br>다. 공기압축기, 석션기<br>라. 멸균기<br>마. 구내 X-ray 촬영기<br>바. 치석제거기<br>사. 광중합기<br>아. 진료물품 보관 냉장고<br>자. 냉난방기        | 유닛 체어 2대<br>(장애인 유닛 체어 포함) 이상을 이용하여 구강질환 예방·치료 등의 1차 진료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장비 |
| 2. 구강보건교육실 | 33m <sup>2</sup> 이상 | 가. 교육용 칫솔모형<br>나. 교육용 치아모형<br>다. 칫솔질용 세면대<br>라. 간이 위상차 현미경<br>마. 컴퓨터<br>바. 모니터<br>사. 구강카메라<br>아. 교육 상담용 탁자<br>자. 교육물품 보관장<br>차. 냉난방기 |  |
| 3. 구강보건사업실 | 27m <sup>2</sup> 이상 | 가. 컴퓨터, 프린터<br>나. 전화기, 팩스<br>다. 사무용 책상, 의자<br>라. 회의용 탁자, 의자<br>마. 복사기  |  |